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522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두완수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미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2012. 6. 30.까지 연 20%,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군산시 E 임야 117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18. 체결된

증여계약은 130,807,670원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30,807,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3. 22. 접수 제139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0. 12. 31. F에게 37,000,000원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정산이행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B은 위 가.항 기재 정산이행서의 채무를 포함하여 2012. 4. 10. G에게 “2010. 12. 31. 지불각서 38,000,000원, 2012. 4. 10. 차용 5,000,000원 합계 43,000,000원 중 5,000,000원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2012. 5. 10., 38,000,000원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2012. 6. 30.까지 변제하되, 연체이자 는 연 25%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G에게 “G은 2012. 4. 10. B에게 43,000,000원을 이자 연 20%,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48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5. 9. 24. 원고에게 “I이 원고로부터 2015. 9. 24. 13억 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는데, F은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3. 18.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C은 201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6. 3. 21.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6. 3. 22.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주장

원고는 제1의 다.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하여 F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B은 제1의 가.항 기재 정산이행서에 기하여 F에 대한 37,000,000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던 중 G에 대하여 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는데, F과 G은 피고 B과 위 두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한 사람이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 B으로부터 G을 채권자로 하는 제1의 나.항 기재 차용증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이므로, F은 여전히 피고 B에 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정산이행서에 기한 37,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인 F이 스스로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F의 채권자인 원고는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F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행사한다.

2) 피고 C, D에 대한 주장

원고는 F에 대하여 앞서 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B이 앞서 본 F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은 피고 D에게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F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F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G이 F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한 것은 F이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G에게 양도한 것이고, 피고 B이 G에게 제1의 나.항 기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이므로, F은 피고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F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F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F이 제1의 가.항 기재 정산이행서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G이 2012. 4. 10. 피고에 대하여 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게 되자, F의 위 채권을 G이 한꺼번에 행사하게 하는 합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에게 제1의 나.항 기재 차용증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B이 F에 대한 위 채무를 G에게 변제하도록 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합의는 F의 위 채권에 관한 채권자를 G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라 할 것이고, 피고 B이 제1의 나.항 기재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승낙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F의 제1의 가.항 기재 정산이행서에 기한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2012. 4. 10. G에게 양도됨에 따라 F은 현재 피고 B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설령 G이 피고 B에 대한 43,000,000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피고 B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피보전채권 존재를 전제로 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에 관한 청구원인 등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F이 G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이 위 채권을 다시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와 같이 F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피대위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대위채권 및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F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 F을 대위행사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 B의 제1의 라.항 기재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범